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0. 3. 1. 개정 2010. 7. 1.
전문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5. 8. 31.

제1조(목적) 신입생 전형에 엄정을 기하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총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1.>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

② 위원장은 입학홍보1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5.8.31.>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입학홍보처에서 담당하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입학홍보처 직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8.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① 입학전형제도 개발 및 심의에 관한사항

② 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전형방법, 전형일정, 모집인원 배분 등 입학전형업무 주요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입학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에 관한사항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위원 모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공정성 및 기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의내용 중 위원장이 기밀 유지를 당부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3.7.1.>

제8조(특례적용) 제3조의 기능 중 동일한 내용이 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본 규정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제9조 삭제 <2013.7.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2조(구성 및 운영) ②항, ③항의 입학처장 명칭은 '입학홍보1처장' 입학처 명칭은 '입학홍보처' 로 개정한다.